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흠제 의원 외 9명

나. 의안번호 : 제 3693호

다. 제출일자 : 2026. 5. 26.

라. 회부일자 : 2026. 5. 27.

2. 제안사유

- 최근 국제유가 상승, 경제 상황 변화 및 교통비 부담 증가 등으로 승용차 이용 감소와 대중교통 이용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기후동행카드 및 대중교통 지원 정책 확대와 맞물려 시민 이동패턴이 변화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수요 증가에 대한 체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파업, 재난 등 운행 차질 상황에 대한 비상 대응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용수요 증가 상황에 대한 대

응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외부 요인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수요 증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가 상승, 경제 상황 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의2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6. 5. 30.~ 2026. 6. 3.

- 제출의견 : 의견없음

라. 관계기관 의견¹⁾

- 제출의견 : 수정가결

1) [회신] 제336회 정례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교통정책과('26.6.5.)

- 현재 서울시는 고유가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수요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교통 대책을 이미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정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현행 추진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한다는 취지는 동의하나 상위 법령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규정한 특별교통대책의 수립범위에 부합하도록 문안을 정비하여 개정함이 타당함

의원 발의안	수정 발의안
제19조의2(대중교통 이용집중 대응계획) 시장은 <u>유가 상승, 경제 상황 변화 등 외부 요인</u> 으로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대중교통 이용집중 대응계획) 시장은 「 <u>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u> 」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u>따른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에너지 위기 발생</u>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유가 상승, 경제 상황 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시장이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시민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승용차 이용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수요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서울시가 유가 변동 전후 대중교통 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자가 4.9% 증가²⁾하고, 교통량은 0.9% 감소³⁾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6.3월 「고유가 대응을 위한 대

2) 대중교통 이용자 변화(서울시 보도자료 참고)

구분	일평균 이용자(2.24(화)~26(목))	일평균 이용자(3.10(화)~12(목))	증감
합계	20,405,849명	21,400,482명	994,633명(4.9%↑)
지하철 (1~8호선)	10,336,676명	10,659,585명	322,909명(3.1%↑)
시내+마을 버스	10,069,173명	10,740,897명	671,724명(6.7%↑)

※ 국내유가(휘발유) 가격변화(원/리터)

- (2/24) 1,691원 ⇒ (3/2) 1,703원 ⇒ (3/10) 1,906원 ⇒ (3/20) 1,821원

중교통 활성화 대책」 4)을 수립하여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 수요관리 방안과 선제적 수송 대응책을 마련·추진한 바 있음

- 현행 조례⁵⁾에서는 재난, 파업 등 대중교통 운행 차질 상황에 대한 대중교통 비상 운행 대책을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이용수요 증가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대응 근거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최근 유가 상승, 경제 상황 변화, 행사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혼잡도 상승, 배차간격 확대, 차량 및 역사 내 안전관리 수요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3) 교통량 및 통행 속도 변화(서울시 보도자료 참고)

구분		일평균(A)(2.24(화)~26(목))	일평균(B)(3.10(화)~12(목))	증감
교통량 (대/일)	전체	8,200,012	8,123,865	△ 76,147(△0.9%)
	도심	759,731	760,946	1,215(0.2%)
통행속도 (km/h)	전체	21.66	22.68	1.03(4.7%)
	도심	17.08	17.69	0.61%)

4) 서울시 보도자료('26.3.27.) “서울시, 고유가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전격 시행”

- ▶기후동행카드 신규 이용자 충전요금 10% 티머니 마일리지페이백
- ▶대중교통 집중배차
-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강화
- ▶정부 정책에 맞춘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 ▶대중교통 이용 홍보 등 교통 수요관리 방안과 선제적인 수송 대응책 마련

- 5) 제19조(대중교통 비상 운행대책) ① 시장은 파업, 시위,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중교통 운행대책(이하 “비상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을 통해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동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안 제1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 상승, 경제 상황 변화 등 외부 요인”은 그 범위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응계획 수립의 요건과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반영한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아울러 대응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 수송력 증대, 배차조정, 혼잡도 관리, 이용자 안내, 교통수요 관리 방안 등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과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